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성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93

발의연월일: 2024. 7. 4.

발 의 자:위성곤・박지원・한정애

서영교・허 영・주철현

진성준 • 박희승 • 문대림

이소영 · 강유정 · 김한규

정진욱 • 유건영 • 오세희

조인철 • 박수현 • 양부남

박지혜 · 김성환 · 임미애

위성락 • 민형배 • 박정현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. 이 와 함께 환경부 역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.

그러나 현행법상 수열에너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 괄적으로 위임되어있는 실정임. 이로 인해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 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

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(海水)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(안 제2조및 제2조제2호아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"을 "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햇빛·물·지열(地熱)·강수(降水)·해수(海水)·하천수·하수·지하수·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"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수열에너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"재생에너지"란 <u>햇빛·물·</u>	2 <u>이산화탄소</u>		
지열(地熱)・강수(降水)・생물	등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		
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	햇빛・물・지열(地熱)・강수		
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	(降水)・해수(海水)・하천수・		
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	하수・지하수・생물유기체 등		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<u>을 포함하는</u>		
것을 말한다.	,		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<u>아. 수열에너지</u>		
<u>아</u> . (생 략)	<u>자.</u> (현행 아목과 같음)		